

[재공고-국-제12호]

2023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재공고

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추진 근거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
- 「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, 「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

2. 지원내용

-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內 4개 연구개발과제

과제 번호	연구개발과제명	총 연구개발기간 ('23년 연구개발기간)	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('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)
국-5	자율차-일반차 혼재상황 대비 시 기반 자율주행모빌리티 운영 플랫폼 개발	'23.04~'27.12, 4년 9개월 ('23.04~'23.12, 9개월)	15,000백만원 이내 (3,000백만원 이내)
국-9	자율주행 리빙랩 실증환경 운영 및 서비스를 통한 사업모델 개발	'23.04~'27.12, 4년 9개월 ('23.04~'23.12, 9개월)	45,000백만원 이내 (1,100백만원 이내)
국-15	자율주행 Lv.4/4+ 기반 긴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	'23.04~'27.12, 4년 9개월 ('23.04~'23.12, 9개월)	8,000백만원 이내 (1,500백만원 이내)
국-22	자율주행 Lv.4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및 표준적합성 시험방법 개발	'23.04~'27.12, 4년 9개월 ('23.04~'23.12, 9개월)	5,000백만원 이내 (500백만원 이내)

※ 연구개발내용,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「(재공고-국-제12호) 2023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」의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
3.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

- 「(재공고-국-제12호) 2023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시행 공고 안내서」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

4. 신청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

- 「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 별표1(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)
해당 기관은 제외

5.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

- 신청서류 제공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iris.go.kr>) 또는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
- 인터넷 입력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iris.go.kr>) 내 R&D업무포털
- 신청서류 접수일정

재공고기간	인터넷(전산)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
'23.02.28(화)~'23.03.07(화) 18:00까지 (7일)	'23.02.28(화)~'23.03.07(화) 18:00까지 (7일)

6. 문의 및 기타

- 문의
 - 문의(RFP 및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관련) :
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교통서비스융합팀 김원길 팀장(02-3472-5925,
wongil@kaia.re.kr)
 - 문의(재공고 및 입력 관련) :
진흥원 모빌리티본부 교통물류사업실 이호 연구원(031-389-6457, leeho@kaia.re.kr)
 -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1877-2041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iris.go.kr>), 「(재공고-국-제12호) 2023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, 「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및 「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 등 참조

2023년 2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